
 보도자료 			
배포일시	2021. 11. 15.(월) 조간 * 인터넷 2021. 11. 14.(일) 12:00 이후 / 총 6쪽		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과 장 양현수 사무관 이철호	044-202-8901 044-202-8904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고용부, 건설·제조업의 추락·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(9~10월) 운영결과 발표

- 중소규모 건설·제조업 2,600여 개소를 집중 감독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880여 개소 적발하고 610여 개소 입건
 - * 위반사업장에 과태료 9억 원 부과,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 등 건설용 리프트, 천장크레인, 산업용 로봇 등 63건 사용중지 명령
- 적발한 880여 개소는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계속 반복, 엄정대응 방침
 - * 적발한 880여 개소 중 130여 개소 재점검, 10여 개소 재적발

□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‘집중 단속기간(8.30.<월>~10.31.<일>)’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.

* (내용) ▲3대 안전조치(①추락 안전조치, ②끼임 안전조치, ③개인보호구 착용) 불량사업장 집중 감독, ▲주말·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불시감독, ▲지역별 특화 기획감독

□ 집중 단속기간(8.30.~10.31.) 중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*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,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(33%)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**했다.

* (불량사업장) ▲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, ▲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 등 부재(미지정) ▲시정지시 미이행 ▲현장점검의 날 또는 패트를 점검 거부 등 ** (과태료) 9억여 원, ▲(사용중지) 63건

○ 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□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(77%)이 제조업(51%)보다 26%P 높게 나타났다.

* (위반·사법조치 현황) ▲(건설업) 619개소 중 478개소(77%), ▲(제조업) 263개소 중 133개소(51%)

○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사법조치 비율이 높은 이유를 “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(7~8월)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”라고 설명했다.

○ 반면 건설업에 비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·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높았다.

* (사용중지 현황) ▲제조업 61건(97%, 천장크레인, 산업용 로봇 등), ▲건설업 2건(3%, 건설용 리프트)

□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(21.3%)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(6.9%)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.

* (재점검 결과) 위반사업장 882개소 중 188개소에 대해 불시 재점검 → 13개소 재위반 (10.31. 기준)

(재점검 위반사례①) 고소작업대의 안전장치(과상승 방지장치) 미사용

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장소 천장에 덕트, 전선관, 배관 등 끼임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시작 전 끼일 수 있는 위험부분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작동하는 안전장치인 ‘과상승 방지장치(리미트 스위치)’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작업 → 관리자와 작업자 모두 안전 무관심



(재점검 위반사례②) 화재 예방조치 미이행

작업장 내 화기를 사용하는 등 화재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(소화기 비치 등 설비 조치) 미이행 →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

□ **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**은 “집중 단속기간(8.30~10.31.)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·제조업의 추락·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*하였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*(33%)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”라고 우려하면서


* (중소규모 건설·제조업 추락·끼임 사망자 현황) '20.9~10월 56명 → '21.9~10월 29명(48.2% 감소)

** (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) 2,665개소 중 882개소(33%) 산업안전보건법위반

○ “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*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
* (재점검 결과) 위반사업장 882개소 중 188개소에 대해 불시 재점검 → 13개소 재위반 (10.31. 기준)

붙임 집중 단속기간(8.30~10.31.) 운영 실적. 1부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(☎044-202-8904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집중 단속기간 운영 실적 (8.30~10.31.)

□ **점검결과(종합)**

- 집중 단속기간 중 2,665개소 감독 → **611개소 입건**(사법조치, 23%)
 - * 감독 사업장 2,665개소 중 882개소(33%) 위반사항 적발, 이 중 611개소(69%) 입건·수사 중
 - * (과태료) 9억여 원(특별안전보건교육 미 실시 등), ▲(사용중지) 63건(건설용 리프트<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>, 천장크레인<안전검사 미 실시>, 산업용 로봇<방호장치 임의 해체 및 사용>, 컨베이어<안전검사 미 실시> 등)
- 위반사업장 비율은 건설(30%)이 제조(43%)보다 13%P 낮으나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(77%)이 제조(51%)보다 26%P 높음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건)

구 분		감독사업장	위반사업장*	사법조치	과태료	사용중지
계	총계	2,665	882 (33%)	611 (69%)	902	63
	건설	2,049	619 (30%)	478 (77%)	365	2
	제조	616	263 (43%)	133 (51%)	537	61
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	소계	1,770	564 (32%)	411 (73%)	395	56
	건설	1,391	432 (31%)	351 (81%)	126	0
	제조	379	132 (35%)	60 (45%)	269	56
주말·휴일 위험작업	건설	409	102 (25%)	71 (70%)	106	2
지역별 특화** (기획감독)	소계	486	216 (44%)	129 (60%)	401	5
	건설	249	85 (34%)	56 (66%)	133	0
	제조	237	131 (55%)	73 (56%)	268	5

* 위반사업장 비율=(위반사업장÷감독사업장)×100, 사법조치 비율=(사법조치사업장÷위반사업장)×100

** (지역별 특화 기획감독) ▲서울청(중규모 이상 건설현장), ▲부산청(중소규모 조선소), ▲서울관악지청(건물외벽 도장공사 등 달비계 관련), ▲강원지청(임업·벌목작업·시멘트 제조) 등

□ **건설업**

- 집중 단속기간 중 2,049개소 감독 → **478개소 입건**(사법조치, 23%)
 - * 감독 사업장 2,049개소 중 619개소(30%) 위반사항 적발, 이 중 478개소(77%) 입건·수사 중
 - * 과태료 3.6억원 부과, 안전검사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중지 명령 2건(건설용 리프트)
- 사법조치 비율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(81%)이 50억 원 이상 현장(68%)보다 13%P 높음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건)

구 분		감독사업장	위반사업장	사법조치	과태료	사용중지
총계	총계	2,049	619 (30%)	478 (77%)	365	2
	50억 원 이상	631	192 (30%)	131 (68%)	267	2
	50억 원 미만	1,418	427 (30%)	347 (81%)	98	0
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	소계	1,391	432 (31%)	351 (81%)	126	0
	50억 원 이상	103	36 (35%)	25 (69%)	36	0
	50억 원 미만	1,288	396 (31%)	326 (82%)	90	0
주말·휴일 위험작업	소계	409	102 (25%)	71 (70%)	106	2
	50억 원 이상	405	101 (25%)	71 (70%)	105	2
	50억 원 미만	4	1 (25%)	0 (0%)	1	0
지역별 특화 (기획감독)	소계	249	85 (34%)	56 (66%)	133	0
	50억 원 이상	123	55 (45%)	35 (64%)	126	0
	50억 원 미만	126	30 (24%)	21 (70%)	7	0

⇒ 건설 현장 동절기 불시감독 및 타워크레인 위험요소 감독 실시

* '지봉공사 작업안전 매뉴얼' 보완배포(11.8.), 지봉공사는 연말까지 '현장점검의 날'을 통해 지속 관리

□ 제조업

○ 집중 단속기간 중 616개소 감독 → 133개소 입건(사법조치, 22%)

* 감독 사업장 616개소 중 263개소(43%) 위반사항 적발, 이 중 133개소(51%) 입건수사 중

* 과태료 5.3억원 부과, 안전검사 미실시 등 사용중지 명령 61건(천장크레인 등)

○ 사법조치 비율은 50인 미만 사업장(53%)이 50인 이상 사업장(37%)보다 16%P 높음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건)

구 분		감독사업장	위반사업장	사법조치	과태료	사용중지
계	총계	616	263 (43%)	133 (51%)	537	61
	50인 이상	74	35 (47%)	13 (37%)	197	6
	50인 미만	542	228 (42%)	120 (53%)	340	55
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	소계	379	132 (35%)	60 (45%)	269	56
	50인 이상	20	9 (45%)	4 (44%)	33	6
	50인 미만	359	123 (34%)	56 (46%)	236	50
지역별 특화 (기획감독)	소계	237	131 (55%)	73 (56%)	268	5
	50인 이상	54	26 (48%)	9 (35%)	164	0
	50인 미만	183	105 (57%)	64 (61%)	104	5

○ 폐기물 처리업은 제조업과 기타업종보다 위반사업장 비율(65%)과 사법조치 비율(91%)이 상대적으로 높음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건)

구 분	감독사업장	위반사업장	사법조치	과태료	사용중지
계	616	263 (43%)	133 (51%)	537	61
제조업	559	234 (42%)	108 (46%)	507	61
폐기물 처리업	34	22 (65%)	20 (91%)	3	0
기타 업종	23	7 (30%)	5 (71%)	26	0

⇒ 폐기물 처리업은 연말까지 '현장점검의 날', '패트를 점검'을 통해 추락 및 끼임 위험을 동시 점검하며 집중 관리

□ 9~10월 중소규모 건설·제조업의 추락·끼임 사망자 현황

○ 집중 단속기간(8.30~10.31.) 중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에서 발생한 추락·끼임 사망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명이 감소

* (사망자 현황) '20.9~10월 56명 → '21.9~10월 29명(27명, 48.2% 감소, '19년 45명 대비 35.5% 감소)



<9~10월 건설업(50억 미만), 제조업(50인 미만) 추락·끼임 사망자 추이>

[참고] 건설업(50억 미만), 제조업(50인 미만) 전체 사망자 추이(9~10월)	'16.9~10월	'17.9~10월	'18.9~10월	'19.9~10월	'20.9~10월	'21.9~10월
	72명	86명 (+14명)	73명 (△13명)	65명 (△8명)	90명 (+25명)	54명 (△36명)